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01
----------	-------

발의연월일 : 2025. 9. 23.

발 의 자 : 정진욱 · 정준호 · 이병진
이개호 · 복기왕 · 양부남
박지원 · 조인철 · 전진숙
안도걸 · 김문수 · 이언주
박민규 · 박균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의 현장 출동과 악취 측정이 지연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를 즉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악취는 기상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현장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여 악취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악취 민원 발생 시 실시간 측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악취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경우, 민원 접수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간 악취 측정 결과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제6항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악취 민원 발생 시 실시간 측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악취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경우, 민원 접수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실시간 악취 측정 결과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u>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 ⑤ (생 략) ⑥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u>구청장</u>(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구청장</u>----- -----

<u>하 같다</u>)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 하여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 청할 수 있다. ⑦ ~ ⑨ (생 략)	----- ----- ----- ----- -----. ⑦ ~ ⑨ (현행과 같음)
--	---